#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16

발의연월일: 2022. 6. 14.

발 의 자:이동주·강민정·강훈식

김주영 · 송재호 · 양경숙

유정주 • 이상헌 • 이성만

이정문 · 정일영 · 주철현

진성준 • 허종식 • 서동용

김영배 · 김경만 · 위성곤

이수진 의원(19인)

#### 제안이유

도시형소공인이 몸담고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 산업의 기본이자 근 간으로서 노동집약적이고 장기간의 숙련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작업환 경과 낮은 인건비 등으로 신규인력의 유입이 점점 감소하고 장기간 근속이 담보되지 않아 전문인력 양성이나 기술 전수가 어려워 핵심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포함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 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법률을 정비하여 정책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열악한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펼침으로써 기반산업을 굳건하게 지탱하고있는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형소공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 수립 과정에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후단 신설).
- 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도시형소공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형 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정책심의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의2 신설).
- 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에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복지를 증대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5호 신설).
- 라.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일자리 알선 및 노무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함(안 제1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 법률 제 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8.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9.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도시형소공인정책심의위원회) ①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의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도시형소공인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다.
-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2. 도시형소공인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 3. 도시형소공인을 대표하는 사람
- 4.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 복지증진 및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④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관리 제18조제2항제4호 중 "도시형소공인에 관한"을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 자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에 대한 노무 상담, 교육훈련 및 조사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
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	획의 수립) ①
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형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u>이 경우 제6</u>
	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
	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u>한다.</u>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8.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
	<u>한 사항</u>
<u>&lt;신 설&gt;</u>	9.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자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u>8.</u> (생 략)	<u>10.</u>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6조의2(도시형소공인정책심의
	위원회) ①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의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부에 도시형소공인정책심의위 원회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 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2. 도시형소공인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 3. 도시형소공인을 대표하는 사 <u>람</u>
- 4.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자를 대 표하는 사람
-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및 근 로자의 권익보호, 복지증진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시·도지사 및 이프라 구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④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 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실 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 ~ 4. (현행과 같음)
- 5.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자를 위 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 치·관리
- 6. (현행 제5호와 같음)

- ②・③ (생 략)
- 설치·운영) ① (생 략)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② -----업무를 수행한다.
  - 1. ~ 3. (생략)
  - 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신 설>

5. (생략)

③ ~ ⑥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 4.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에 대 한-----

- 5.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에 대한 노무 상담, 교육훈련 및 조사
- 6. (현행 제5호와 같음)
- ③ ~ ⑥ (현행과 같음)